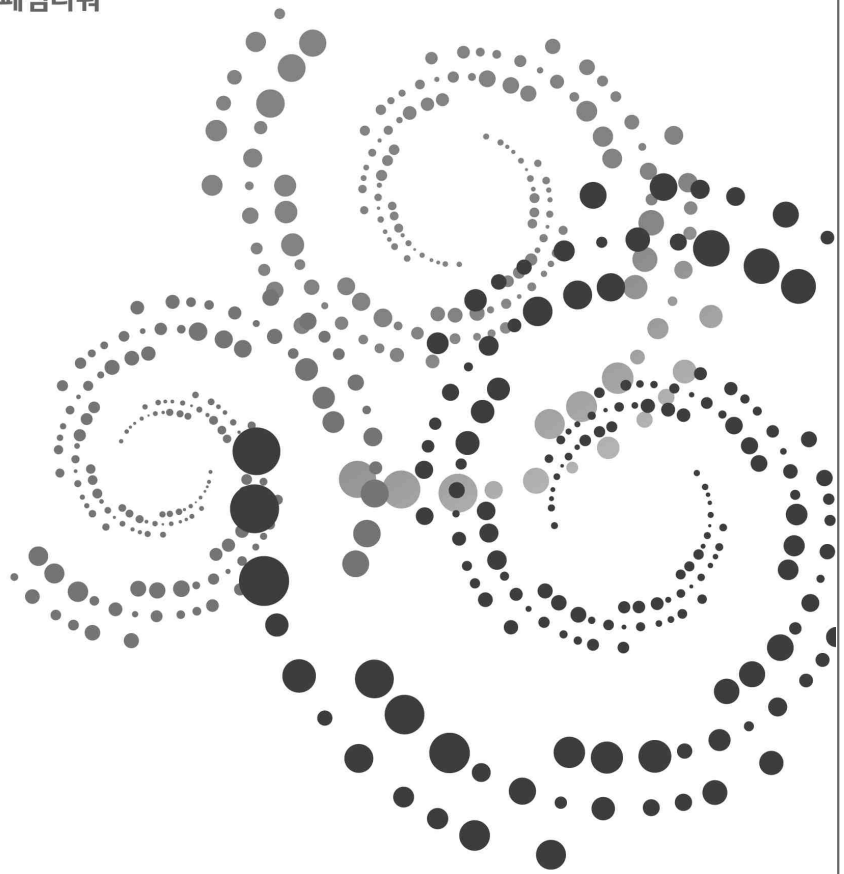


한-영 반부패 세미나

Korea-UK Anti-Corruption Seminar

2014년 12월 9일 서울 페럼타워



환 영 사



2014. 12. 9(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성 보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과 오늘 행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에 참가하여 주실 영국 법무부 로드릭 맥콜리 법률자문관,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마틴 크레이고 아시아담당관, 피터 클라크 런던경시청 경제범죄 수사관,
PCAW 샘 베러켓 법률 연구원, 클리포드찬스 로펌의 토마스 월쉬 변호사,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이성규 변호사님,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9일은 유엔 반부패협약의 제정을 기념하여 유엔이 지정한 세계반부패의
날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에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패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마다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범위와 처벌수준도 다르며, 특정 국가에서 성공적이었던 반부패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추진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그 성공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세미나는 ‘뇌물의 예방’, ‘부정부패 자금의 환수’ 그리고 ‘부패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3가지 중요한 반부패 영역에서 한국과 영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비교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민원 처리에 있어서의 청렴도 측정과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점검 그리고 다양한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공분야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 청탁 관행으로 인한 고질적 부패 고리를 단절하고, ‘정부 돈은 눈먼 돈’이란 그릇된 인식에서 나타난 공공재정의 허위·부정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패방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입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 친화적 관행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 청렴 수준의 도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오늘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서 공유하게 될 영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경험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한국과 영국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스콧 화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님과, 발표자 및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환영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2014. 12. 9(화)
주한영국대사 스콧 화이트먼

내외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이성보 위원장님.

먼저 이성보 위원장님의 친절하고 통찰력 있는 개회사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국정부를 대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올해 4월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이 추진된 이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여러 면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성보 위원장님의 리더십과 권익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포함한 많은 협력기관들의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의 발전과 함께 2015년에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 먼 길을 와 주셨고,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패와 뇌물, 그리고 관련 주제들에 대한 연사님들의 축적된 지식과 이해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업인 여러분, 정부관계자 및 관련 기관에서 참석하셔서 우수사례와 우리 모두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상당히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부패척결이야말로 한 국가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과옥조”와도 같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국내 및 해외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정부는 부패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는 국가 반부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패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만이 부패척결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와 목표, 그리고 단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이유는 분명하고 또 간단합니다.

이성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은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오늘 이야말로 우리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는 사회적·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정부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부패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으면서 부패에 대한 무관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Call to Action: 반부패와 글로벌 개발 아젠다 (Anti-corruption and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서명 안내

안녕하십니까.

10년 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반부패 원칙이 채택된 이후, 글로벌콤팩트와 파트너들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동행동방안(collective action)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다양한 반부패 이슈에 관한 보고서와 반부패 리스크 평가 및 공급망에서 반부패 방지 등 다양한 지침과 틀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부패가 여전히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0번째 원칙 채택의 10주년을 기념하며 회원사들이 'Call to Action: 반부패와 글로벌 개발 아젠다(Anti-corruption and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에 서명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해주기를 촉구합니다.

1. 반부패 논의와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이 정부에 제안한 요청

Call to Action은 반부패와 올바른 지배구조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행동강령(Action)입니다. 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실무그룹과 세계은행, the Open Contracting Initiative, 투명성기구의 멤버로 구성된 전담반이 개발과제 중 반부패 및 올바른 지배구조에 대한 민간부분의 관점을 6개월 간 개발, 협의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Call to Action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 1) 반부패 관련 정책과 법의 강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매커니즘 이행, 모범적 관행의 장려 등을 통해 유엔반부패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조항들을 온전히 이행 및 집행할 것.
- 2)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과 조달 과정에서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 3) 정부의 모든 조달 건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투명한 조달 절차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4) 민간 부문의 기업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부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
- 5) 기업에서 반부패 이행 촉진, 지배 구조 선진화, 혁신적인 공동행동방안 마련,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

2. 왜 기업이 Call to Action에 서명해야 하는가?

Call to Action에 서명한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 올바른 지배구조 및 반부패의 증진에 앞장 서는 리더십 입증.
-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및 공정한 경쟁의 장 형성에 공헌.
- 책임감 있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소비자 유치로 경쟁 우위 획득.
- 반부패 정책 의제의 형성과 미래의 법과 규제에 영향.

3. Call to Action에 서명을 한 이후에는?

Call to Action 에 서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반부패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업 활동과 업무 전략, 또한 조직문화에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반영
- 조직의 최고경영자부터 뇌물과 부패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풍토 확립
- 반부패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각국 협회, 또한 구체적인 이행 프로그램 등에 다른 기업 및 이해관계자와 공동 참여.
- 철저한 공개와 투명성 제고, 반부패 이행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

Call to Action의 회원사는 2014년 12월 1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글로벌 콤팩트의 10번째 원칙 기념 행사에서 그 노력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또한 서명 기업으로서, 귀사의 이름은 유엔글로벌 콤팩트 웹사이트에 게재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Call to Action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반부패를 위해 민간 부문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질 것입니다.



4. Call to Action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Call to Action에 참여하는 귀사는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반부패를 내재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반부패를 내재화하는 것은 조직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의 산업체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귀사는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 기업의 이름을 게재하거나 해쉬태그(#BizAgainstCorruption)를 사용함으로써 Call to Action에 대한 귀사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Call to Action의 다섯 가지 요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unglobalcompact.org/docs/issues_doc/Anti-Corruption/Call_to_Action_FAQ.pdf 에서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Call to Action에 서명하는 방법

시작 단계 또는 선도 단계에서 반부패 노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Call to Action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Call to Action에 서명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Call to Action에 대한 지지와 부당취득 및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다짐(약속)을 나타내는 편지에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 기업으로써, 유엔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에 기업명 게시를 원하는지 여부를 귀사의 편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를 표명하는 샘플레터는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서명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UNGC 본부와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NGC 본부: anticorruption@unglobalcompact.org

UNGC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 환 영 사	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 축 사	4
〈주한영국대사 스콧 화이트먼〉	
■ Call to Action: 반부패와 글로벌 개발 아젠다	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이은경〉	
■ 한-영 반부패 세미나 개요 및 일정	11

1. 뇌물의 예방 Prevention of bribery

■ 부정청탁 금지법(안)과 뇌물 규제	15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안준호〉	
■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기소유예약정	27
〈영국 법무부 법률자문관 로드릭 맥콜리〉	
■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와 영국의 뇌물방지법	35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성규〉	

2. 부정부패 수익의 환수 Recovery of the proceeds of corruption & fraud

- 공공재정 허위 · 부정 청구법(안) 주요내용 49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박계옥〉
- 중대조직범죄 대응 전략 67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아시아담당관 마틴 크레이고〉
- 한국과 영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 제도 79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용일〉
- 부패수익의 환수 – 제임스 이보리와 관련자 수사 95
〈영국 런던경시청 경제범죄수사관 피터 클라크〉

3.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 115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서기관 주경희〉
- 영국 공익신고보호법과 PCaW의 역할 125
〈영국 PCaW 법무연구원 샘 베러켓〉
- 효과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의 마련 137
〈영국 클리포드찬스 변호사 토마스 월쉬〉

한-영 반부패 세미나 개요 및 일정

□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가 영국 정부와 공동으로 한-영 간 반부패 정책 공유 및 관계기관 협력, 공공·민간의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14.4월~’15.3월)의 일환
- UN 반부패의 날(12.9) 및 UN 글로벌콤팩트 반부패원칙 채택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반부패 주간” 행사로 개최

□ 추진 목적

- 한국과 영국의 뇌물규제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정보 공유
- 부정청탁 금지 및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방지 법안 관련 인식제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4. 12. 9.(화) 14:00~18:30,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참석자 : 국내 공공·민간 기업,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한 외국기업 등 200여 명
- 회의 주제 : 뇌물의 예방, 부정·부패 수익의 환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 언어 : 한국어(한영 동시통역)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협력기관 : 주한영국대사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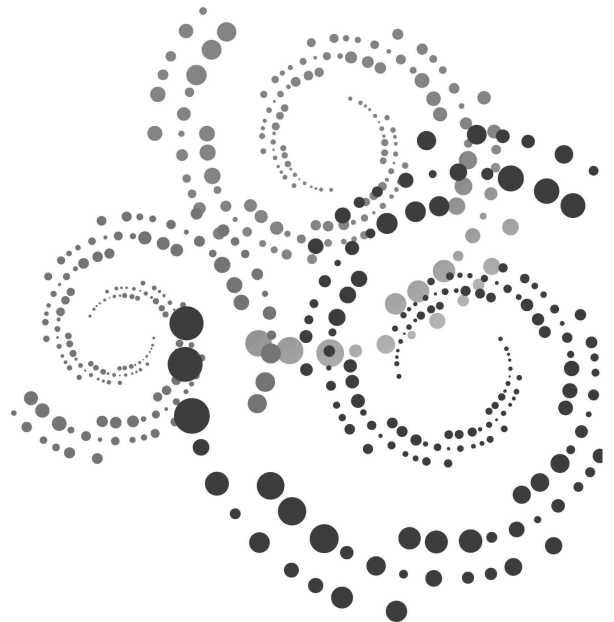
□ 회의 일정

시 간	프 로 그 램
14:00~14:05(5분)	환 영 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14:05~14:10(5분)	축 사 주한영국대사 스콧 화이트먼
14:10~14:15(5분)	Call to Action: 반부패와 글로벌 개발 아젠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이은경
14:15~14:20(5분)	기념사진 촬영 (연사 및 발표자)
14:20~15:30 (70분)	1. 뇌물의 예방 Prevention of bribery - 부정청탁 금지법(안)과 뇌물 규제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안준호 -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기소유예약정 영국 법무부 법률자문관 로드릭 맥콜리 -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와 영국의 뇌물방지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성규
15:30~15:40 (10분)	휴 식
15:40~17:10 (90분)	2. 부정부패 수익의 환수 Recovery of the proceeds of corruption & fraud -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법(안) 주요내용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박계욱 - 중대조직범죄 대응 전략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아시아담당관 마틴 크레이고 - 한국과 영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 제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용일 - 부패수익의 환수 - 제임스 이보리와 관련자 수사 영국 런던경시청 경제범죄수사관 피터 클라크
17:10~17:20 (10분)	휴 식
17:20~18:30 (70분)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 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 서기관 주경희 - 영국 공익신고보호법과 PCaW의 역할 영국 PCaW 법무연구원 샘 베러켓 - 효과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의 마련 영국 클리포드채스 변호사 토마스 월쉬
18:30~18:35 (5분)	폐 회

한·영 반부패 세미나

01

뇌물의 예방
Prevention of brib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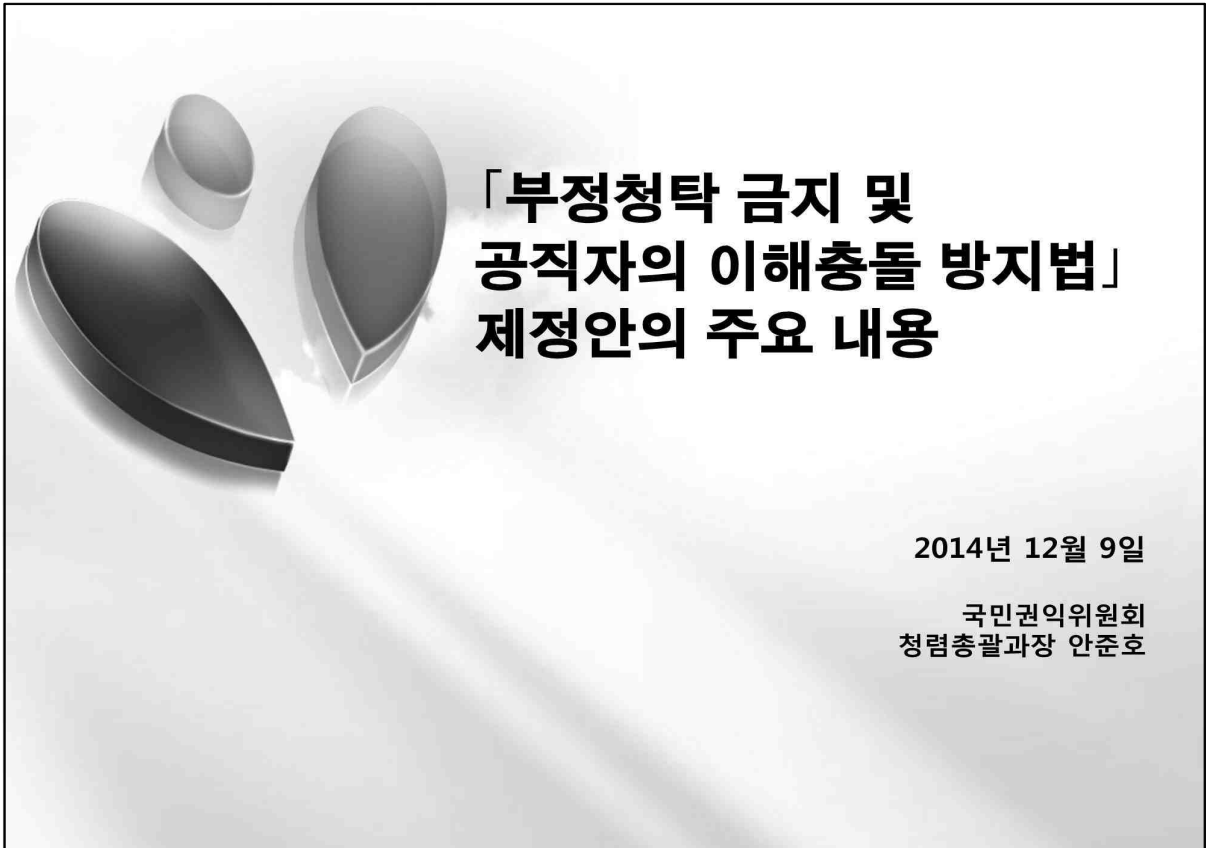




부정청탁 금지법(안)과 뇌물 규제

■ 안 준 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발표순서

- I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II 구성 및 적용대상
- III 법률안의 주요 내용

I.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추진배경

-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및 국가청렴도 하락 우려
※ '13년 부패인식지수(CPI) : 55점, 177개국 중 46위(국제투명성기구 발표)
- 은밀화·고도화 되어가는 공직사회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응 필요
 -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직무관련성·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 부패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의 효과적인 관리장치 필요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1

I.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추진경과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2차에 걸친 공개토론회 개최('11.10.18, '12.2.21)
-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 : 광주('12.4.23), 대전(4.24), 부산(5.2)
- 참여연대, 흥사단 등 5개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12.6.21)
※ 반부패 시민단체, 18대 대통령선거 반부패 정책공약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요구('12.10.10)
- 관계기관 의견 조회('12.5.7~5.18) 및 협의('12.5월~'13.6월)
- 대국민 입법예고('12.8.22~'12.10.2)
- 차관회의('13.7.26), 국무회의('13.7.30) 의결
- 국회 제출('13.8.5), 법안소위 상정('14.5.27) 등 3회 심사 진행



2

II. 구성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목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3

II. 구성 및 적용대상



법률안의 적용대상

대상기관

모든 공공기관

- ✓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시도교육청, 각급 국·공립학교
-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

적용대상자

-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등 모든 공직자, 공직자의 가족
- ✓ 공무수행사인
-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4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I.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금지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

*과태료 : (이해당사자) 1천만원, (제3자) 사인 2천만원, 공직자 3천만원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II. 금품등 수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 및 가족의 금품 수수 및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금품 제공 금지
✓ 직무와 관련한 또는 그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수수

*과태료 : 수수금액의 2~5배

"법인의 책임"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금품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대가로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를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II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제11조)
-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제12조)
-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제13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제14조)
- 가족 채용 제한 (제15조)
-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제16조)
-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제17조)
- 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제18조)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제19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20조)

7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II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 공직자를 자신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인 경우,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관리장치 마련
- 금지된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게 과태료 부과



8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II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전 3년 이내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년간 해당 직무의 수행 제한
 - 제한되는 직무는 재정보조, 인·허가 등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 한정
- 고위공직자는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등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고위공직자가 금지된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하거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

9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II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외부활동의 중지·종료를 명령
- 금지된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

10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II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 공직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직무관련자 등과 거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한되는 거래행위 : ① 금전차용·대부 및 유가증권 거래행위,
②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제14조)*
- 소속기관장은 거래행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거래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직무 일시중지 등을 조치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등이 신고대상 행위를 하도록 지시·유도·조정 또는 묵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

11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II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의한 채용은 허용*
- 금지된 가족 채용을 지시·유도·조정하거나 채용되는 것을 묵인한 공직자에게 과태료 부과

•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 고위공직자,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는 소속 공공기관,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 체결은 허용*
- 금지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조정하거나 묵인한 공직자에게 과태료 부과

12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II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 기타 제한 행위

-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시설 등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다른 공직자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사적인 노무제공 행위
-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조사·입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13

III. 법률안의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조사기관은 조사결과와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 조치사항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 보상 및 포상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포상금 지급

14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기소유예약정

■ 로드리크 맥콜리

영국 법무부 법률자문관

영국의 뇌물방지 정책 뇌물방지법(2010)과 기소유예약정

영국 법무부 법률자문관
Roderick Macauley



Ministry
of Justice

개 요

- 뇌물방지법(2010) – 전반적인 계획
- 제7조. 영리단체의 뇌물 예방 불이행
- 뇌물방지법의 집행과 인센티브
- 기소유예약정



Ministry
of Justice

뇌물방지법 Bribery Act(2010)

- 주요 형사법
- 4개 범죄행위의 강력한 규정
 - 일반 뇌물범죄(제1조, 제2조)
 - 직무 또는 활동의 부적절한 수행(제3조~제5조)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 영향 모델(제6조)
 -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불이행(제7조)
- 기소에 대한 동의
 - 위임 불가
- 제재
 - 10년의 징역
 - 무제한의 벌금
- 넓은 관할권
 - 개인 및 법인(제1조, 제2조, 제6조)
 - 영리단체(제7조)



Ministry
of Justice

제7조.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불이행

- 강력한 범죄규정인 동시에 법적책임 감면의 강력한 인센티브
 -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 $\leq$ 제재 + 인센티브
- 강력한 범죄규정
 - 엄격한 책임의 유형
 - 넓은 범위, 영리단체, 관계자; 관할권
- 완전한 면책
 -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
 - 책임감면의 인센티브
- 기업의 굿 거버넌스
 - 접대
 - 급행료
- 기업의 공모, 동의 및 묵인에 대한 책임



Ministry
of Justice

뇌물방지법의 집행과 인센티브

- **기업의 자진신고**
 - “적절한 절차”
 - 완전한 정보공개 및 투명성
 - 비형사적 처리 가능
 - 비형사적 처리를 보장하지는 않음
- **민사상 자산회복**
 - 범죄로 발생한 이득이 아닌 모든 범죄 관련 수익
 - 제7조상 면책사유 적용 –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
- **기소유예약정**
 - 법적책임 감면을 위한 인센티브(2014. 2. 24 도입)



Ministry
of Justice

기소유예약정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 **제45조 및 범죄 및 법원에 관한 법**(Crime and Courts Act 2013) 부록 17
 - 부록 17 – 사기행위 및 뇌물 등 경제·금융 범죄
- **단체만 해당**
- **투명성** – 절차, 사법심사, 공표
- **보조 지침**
 -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 새로운 양형기준
 - 형사절차규칙(Criminal Procedure Rules)



Ministry
of Justice

기소유예약정 : 주요내용

사실의 진술

- 유죄를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부정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정해야 함
- 당사자 간 합의되어야 하며, 법원은 분쟁사안을 해결하지 않음

기간

- 만료기한 명시

조건

- 비강제적 조건
- 부록 17에 명시된 사항 포함 가능 - 보상, 벌금, 비용, 준수 절차 등
- 모든 "이득"을 반환



Ministry
of Justice

기소유예약정 : 위반 및 변경

약정위반

- 경미한 위반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위반행위 시정
- 중대한 위반
 - 법원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반 여부 판단
 - 당사자 간 구제절차 합의, 법원이 약정변경 판단

약정변경(검사가 요청하여, 법원이 변경할 수 있음)

- 법원에서 약정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구제를 위해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
- 예상되는 위반



Ministry
of Justice

기소유예약정 : 종료

종료(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종료 가능)

-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약정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절차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 법원이 제안된 구제절차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종료 후속조치

- 약정 종료 이전에 약정에 따라 납부된 돈은 반환 불가
- 검찰은 기소유예 중지를 요청하고, 기소 재개 가능



Ministry
of Justice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와 영국의 뇌물방지법

■ 이 성 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의 부패방지제도 소개

- UK Bribery Act 와의 비교



2014년 12월 9일

KIM & CHANG



목차

1. 한국의 부패방지제도 소개
2. UK Bribery Act 와의 비교

KIM & CHANG

반부패 관련 Global 리스크



한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OECD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영국

부패방지법 2010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CPA)



유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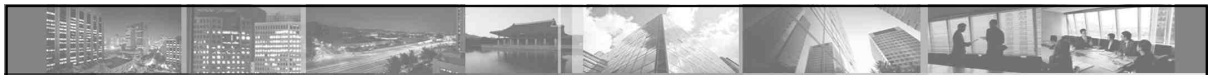
반부패협약



유럽연합

뇌물협약

3 | KIM & CHANG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

KIM & CHANG

한국의 부패방지법령



5 | KIM & CHANG

뇌물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제공

- 공무원: 정부 공무원, 준공무원 포함
 - 별도 법령에 의해 정부관리업체, 금융기관 임직원 포함
- 뇌물: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공여자 및 취득자 모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뇌물액수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6 | KIM & CHANG

배임증재죄

사인(私人)에 대한 뇌물제공

- 공무원 아닌 일반 회사 직원 포함
- 금품·이익 등 일체 제공
- 그 사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 공여자 및 취득자 모두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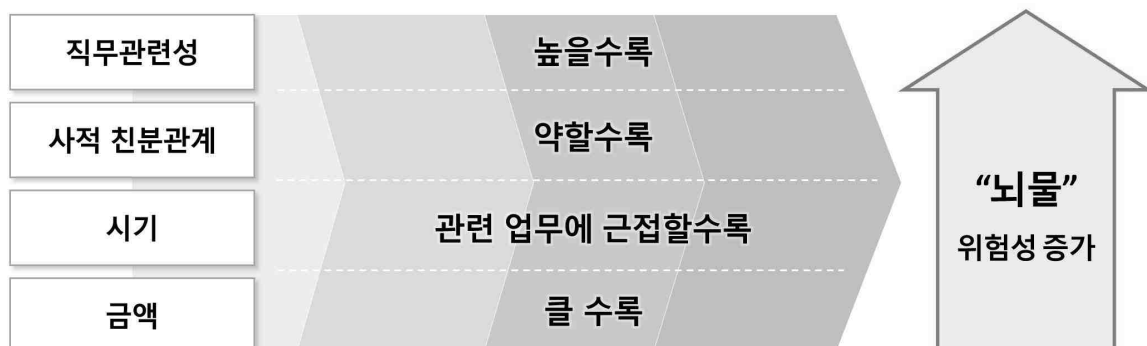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 KIM & CHANG

뇌물 판단 기준 : 상황의 총체성

- 금액과 명목만으로는 뇌물 여부 판단 곤란
- 사회상규 및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 대법원 판결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8 | KIM & CHANG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라도...

3만원 상당 식사 제공 2회, 500만원 및 1,000만원 공여의사표시

-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마포구청 주택과장에게 2회에 걸쳐 식사 제공
- 마포구청 주택과장에게 500만원 제공하였으나 거절
- 목적: 재건축 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
-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원 자녀 결혼식에 5~10만원 상당의 축의금 제공 : 뇌물죄 인정

- 고등법원에서는 5~10만원 정도의 축의금은 사회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죄
- 대법원에서는 비교적 소액의 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뇌물죄 성립 인정

9 | KIM & CHANG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9년 제정
 - 미국의 FCPA와 유사한 법률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함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을 인정함
 -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

Penalties

공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 | KIM & CHANG

공무원행동강령

2003. 5. 19.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

-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금전, 선물 또는 향응”)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 / 경조금품 액수 제한(50,000원)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한 예외사유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e.g. 30,000원)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11 | KIM & CHANG

실무

 경조사비	 선물 (설/추석)	 골프/식사
 접대	 세미나/공식행사	 기부금

12 | KIM & CHANG

최근 동향 - 무거운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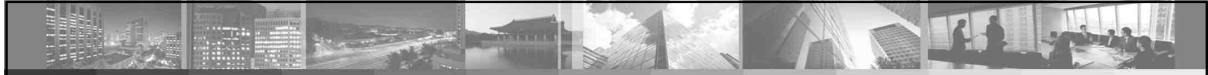
- ① 수사기관은 특정인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제공된 금품, 향응 등 공여액 일체를 합산하여 처벌하려는 경향 (통상 2~3년 동안의 기간 합산)
 - 회사는 특정인에 대한 이익제공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 ② 수사기관은 행위의 관여가능성이 있는 최고 책임자를 추적하려는 경향
 - 그러나, 형사책임은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임
- ③ 공모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하도급업체, 유통업체, 사업 파트너 등 제3자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④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음
 - 광범위한 관할권 적용

13 | KIM & CHANG

최근 동향 -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 ① 뇌물행위에 대한 조사는 고도의 업무방해 야기
 - 불필요한 소환 및 추궁 야기, 기타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오해로 회사의 시장가치 하락 (e.g. 주가하락, 브랜드 이미지 실추)
- ② 고객, 경쟁사 등으로부터의 민사소송 제기의 위험성
- ③ 공정거래법 이슈: “경쟁업체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정지·시정명령, 위반 공지, 매출액 2%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④ 세법 이슈: 접대비를 사업비용으로 과다계상하는 경우 조세회피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음
 -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회사에 대한 책임

14 | KIM & CHANG



UK Bribery Act 와의 비교

KIM & CHANG

영국 뇌물법 (2010)

- 1 2011. 7. 1.부터 효력 발생
- 2 세계에서 가장 적용 범위가 넓은 부패방지법으로 꼽힘
- 3 영국 회사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게도 적용
- 4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주요내용

- 사기업에 대한 뇌물 제공 및 수령 금지
-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금지
- 제공 회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 인정
(‘관련된 자’에 의한 위반행위, Adequate Procedures의 부재)

16 | KIM & CHANG

UK Bribery Act 와의 비교

- 1 뇌물의 정의에 관한 실질적인 개념의 차이는 없음
- 2 모든 사적 영역의 뇌물 제공 행위도 처벌함 cf. 미국 FCPA
- 3 한국법의 경우 행위자 개인만 처벌할 뿐, 법인 자체를 처벌하지 않음
- 4 영국법에 특유한 영리단체 뇌물예방 실패 책임
 - 법인 처벌
 - 영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도 처벌 (관할권의 확장)

17 | KIM & CHANG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의견이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張 法律事務所
KIM & 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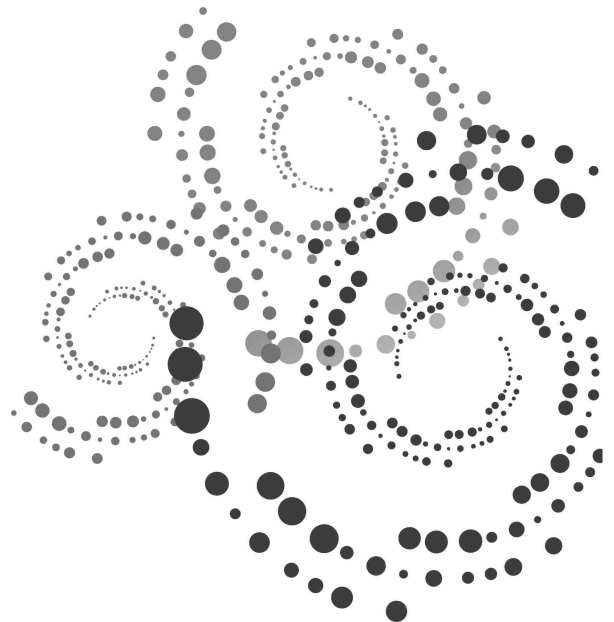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110-720
Tel: 02) 3703-1114 Fax: 02) 737-9091 / 9092 E-mail: lawkim@kimchang.com Website: www.kimchang.com

한·영 반부패 세미나

02

부정부패 수익의 환수

Recovery of the proceeds of
corruption & fraud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법(안) 주요내용

■ 박 계 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공공 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2014.12

제정안의 주요내용



1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INTRO

I. 추진 배경

II. 추진 경과

추진 배경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에 관한 세계 각국의 통제 강화

- ✓ 미국 주정부 부정수급조사국 설치·운영
- ✓ 영국 통합 부정수급 수사국 SFIS 공식
출범 '13.12월
- ✓ 한국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개설·운영
'13.10월

1

한국의 보조금 및 복지예산 현황

- ✓ 국고보조금사업규모
2014년 회계연도 기준 55조원(국가총예산 14%)
- ✓ 복지예산
연간 115조원(정부예산의 30% 이상)
- ✓ 재정누수규모
3% 수준으로 예측
※ OECD의 경우 평균 2~5%
※ '13년도 검·경 집중단속 결과 1,700억원 적발

2

추진 배경

허위·부정 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손실 심각

- ✓ 허위·과다 계상 청구, 연구 개발비 편취,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 ✓ 보조금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축산,
연구개발, 체육관광 등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
- ✓ 권익위 처리 부패사건 '08~'13년 45.9% 차지,
환수 대상액 540여억원

3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시스템 미흡

- ✓ 허위·부정 청구 방지 및 환수를 위한 체계적
관리 규정 미비
- ✓ 개별 법령별 관리 통제에 따라 적용 대상,
제재 여부 및 수준이 상이
※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보조금관리법,
과학기술기본법
➔ 개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수근거
마련을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공공재정
낭비를 예방, 누수된 재정을 철저하게 환수

4

참고 자료1

주요 공공기관의 손실금액과 환수현황

건강보험

최근 5년간 부당청구액 193억원에 대한 환수액은 53억여원으로 27.5%에 불과 '13년 국정감사

부당 건강검진기관 환수 현황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징수율
2011	767	480,391	14,961,278	2,413,773	12,547,502	16.1%
2012	1,034	379,351	2,948,066	1,814,939	1,133,127	61.6%
2013.08	641	238,099	1,415,063	1,089,092	325,971	77.0%
합계	2,442	1,097,841	19,324,407	5,317,804	14,006,600	27.5%

참고 자료2

주요 공공기관의 손실금액과 환수현황

00정책자금

최근 3년간 발생한 5천800여억원의 부실채권 중 27%인 1천500여억원만 회수 '14.5월 권익위

* 손실보전금액 : ('11년) 300억원 → ('12년) 285억원 → ('13년) 500억원

공단 정책자금 부실채권 현황

구분	약정해지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상각현황
2011	169,558백만원	51,780백만원	30.6%	64,952백만원
2012	208,179백만원	48,959백만원	23.5%	104,651백만원
2013	203,182백만원	53,912백만원	26.5%	104,103백만원

참고 자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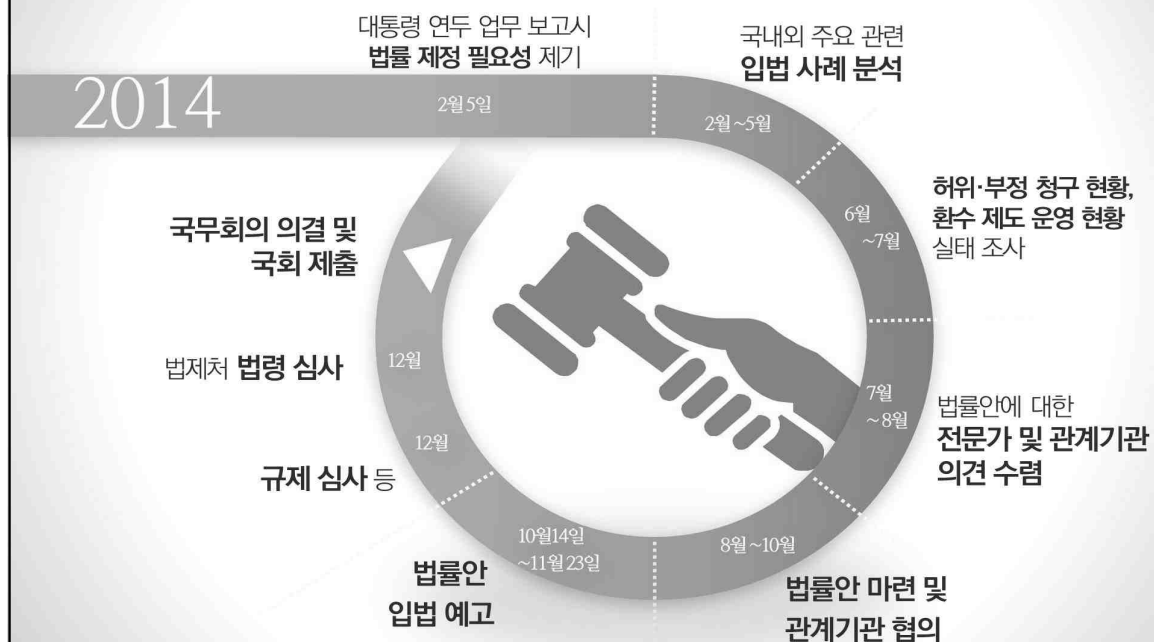
주요 공공기관의 손실금액과 환수현황

연구개발비 ○○기관은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212여억원 중 절반이 넘는 120여억원 (56.5%) 미환수 '14.6월 권익위

연구비 부정사용 및 환수 현황

구분	부정사용 금액	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환수율
2011	2,237,470천원	1,604,214천원	633,256천원	71.7%
2012	5,367,844천원	1,669,407천원	3,698,437천원	31.1%
2013	13,660,246천원	5,967,484천원	7,692,762천원	43.7%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2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법안개요

I. 구성 체계

II. 적용 대상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구성 체계

목적

공공재정의
허위·부정 청구 방지



1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 환수



2

제재
및
절차

제6조
부정청구 등
금지

제7조
시정 조치

제8조
부정이익
환수

제8~9조
제재부기금
부과 및 감면

제11조
최소금액
적용배제

제19조
손해배상
책임

제12조
징수 절차

제14조
조사실시

제14조
이의신청

제17~18조
시효 및
결손처분



적용 대상

적용 대상자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수익자 | 공공기관과 계약관계, 보조금, 출자금, 출연금, 급부금의 수수, 법령 조례상 사용료 납부 등 공공재정의 수입·지출·관리의 상대방

행정청 | 국가 및 지자체의 기관,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조직과 개인



적용 배제

및 타법과 관계

제4조 및 제5조

특이 사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적용을 제외(일반법)

적용 배제 | 관리법규가 잘 정비된 조세 채권과 형벌적 성격의 벌금류 채권은 제외



12

3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법안주요내용

- I.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 금지
- II.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치
- III. 제재부가금 등 부과 및 징수 절차
- IV. 실효성 확보 장치
- V.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

13

1.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 금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유형

제2조 제6호 및 제6조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전 등을 청구 지급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중소기업창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용도와 달리 재산 등을 사용 수익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상환 및 차량 구입 등에 사용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보육시간의 조작 또는 퇴소이동을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 허위 등재하여 보조금 수령

법령상 사용료, 부담금 등 금전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면탈

시공자와 공모하여 화훼생산단지 공사시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 편취

공공기관과 부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시 부실·조작 또는 부당한 이행

플랜트 기술개발업체가 사적 관계가 있는 기업에서 자재구입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금 횡령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채매

부과
징수

실효성
확인

신고
신고자
보호

14

1.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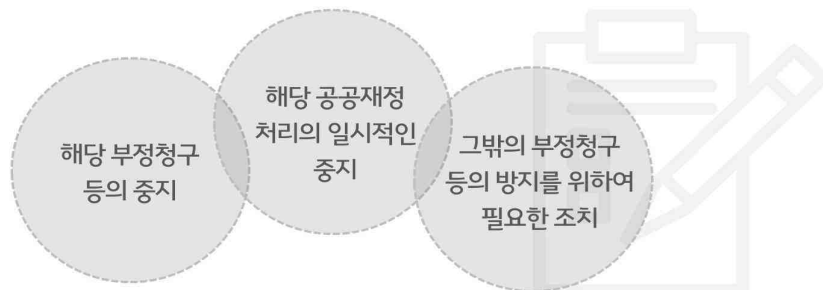
부정청구등에 대한 중지 등 조치 제7조

시정조치
요건

부정 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방치시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행정청은 수익자 등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채매

부과
징수

실효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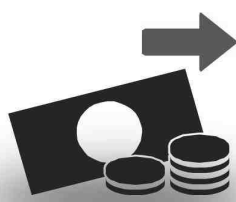
신고
신고자
보호

15

2. 부정청구 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치

원상회복으로서 부정이익 환수

제2조 제7호 및 제8조



부정이익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야기하고
얻은 금전 및 재산

환수권자

소관 행정청

환수범위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이익 및 그로 인한 이자 전체

- ✓ 개별법상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규정 없는 경우 동 법을 적용토록
일반적 환수근거 마련
- ✓ 다만, 타법령에 따른 환수처분, 반환명령 및 변상금 부과처분시 이법에
따른 환수로 간주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제재

부과
징수

실효성
확인

신고
신고자
보호

16

2. 부정청구 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치

제재 부가금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거짓 청구 등에 따른 4개 사유에 한정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또는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행위

공공재정과 관련된 채무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불이행 또는 면탈하는 행위

정당한 절차 없이
정해진 용도와 달리
금전 또는 재산을 사용 수익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제재

부과
징수

실효성
확인

신고
신고자
보호

17

2. 부정청구 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칙적으로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상당액 부과 **1배**
악의적·상습적 부정 청구자의 경우 위반 행위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전력에 따라 **2~5배 가중 부과**

제재부가금 감면 및 적용 제외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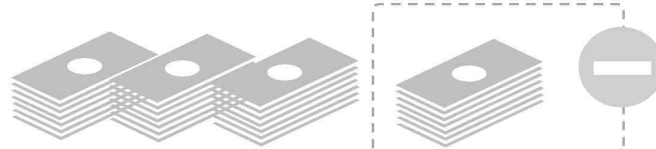
환수조치 개시 전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금 모두 상환시

감면

당해 부정청구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적용 제외

손해액 100만원 이하 및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지원되는
금품은 제외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제재

부과
징수

실효성
확인

신고
신고자
보호

18

2. 부정청구 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개요

적용 범위

계약 등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발생한 허위 부정청구 행위

위반행위

공공재정의 목적외 사용 및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과실책임

수익자등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시 면책

배상범위

법원은 손해액 기준 2~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배상액판정시 법원의 판단기준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제재

부과
징수

실효성
확인

신고
신고자
보호

19

3. 부과 및 징수 절차

제재부과금 등 부과 징수 절차

제12조, 제16조, 제17~18조

부과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되,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가산금	납부불이행 예방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이자율에 따라 최고 60개월까지 가산금 부과
징수 및 불복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처분고지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연대 책임 및 납부 의무 승계

제9조 제3항 및 제13조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하여 부정청구에 관여시 연대하여 상환의무 부과
납부의무 승계	제재부가금의 상속 양도시 상속인 및 양도인에게 부정이익을 환수토록 규정



20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제재

부과
징수

실효성
확인

신고
신고자
보호

3. 부과 및 징수 절차

부정청구 등 조사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등	행정청(공공기관)은 필요시 수익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사업장 조사	자료의 미제출, 재정 침해 사실 인정시 수익자등의 사무실,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서류, 시설 및 장비 등을 조사
과세자료 등 요청	✓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필요시 관할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 등기소 기타 관계 공공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등사 및 등 초본등의 교부 청구 가능



21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제재

부과
징수

실효성
확인

신고
신고자
보호

4. 실효성 확보 장치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제한 제15조

참여제한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확정시 2년 범위내 해당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자는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통지 및 관리	타 공공기관에 참여제한 사실 통지 및 기록 관리
참여제한	참여제한 사실 통보받은 관계행정청은 참여제한조치를 받은자의 소관 사업 참여를 2년 내에서 제한



명단 공표 제22조

대상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부가금 처분 2회 이상 부정이익 3천만원 이상
공표권자	국민권익위원장
방법 및 절차	권익위에 명단 공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상세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제재

부과
징수

실효성
확보

신고
신고자
보호

22

5.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조치

신고자 및 신고기관 제23조, 제26조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신고 가능 ✓ 신고 내용 소관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기관	권익위가 신고 접수시 신고자 상대로 신고내용 확인 후 조사기관 이첩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 강구 제24조, 제26조

개요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신고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호 시스템 강구 필요
신고자 보호 필요	신고자 대상 불이익 금지,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신분 비밀보장, 신분보호 및 책임감면 등 보호 장치 마련 ✓ 권익위법의 관련 규정 준용 : 신분보장(제62조), 신분보호(제64조), 책임감면(제66조)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제재

부과
징수

실효성
확보

신고
신고자
보호

23

5.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조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25조

- | | |
|------------|---|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20억원 지급 |
| 포상금 |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시 벌칙 제26조

- | | |
|-------------------|---|
| 벌칙 내용 | 권익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토록 규정 |
| 형벌·과태료 최소화 | 형벌 규정 및 과태료 부과는 제재부기금 부과에 따른 이중 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화 |



부정
청구
금지

부정
청구
제재

부과
징수

실효성
확보

신고
신고자
보호

24

4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기대효과



법률제정의 기대 효과

전형적 부패행위인

허위 부정청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권익위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02년부터 예산낭비 부패신고를 접수 처리
- ✓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공공재정 관련 부패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 수단 확보

1

일반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환수체계 확립

- ✓ 개별 법령에 환수 근거 및 징수 절차가 없어도 환수 징수가 가능해져 허위부정청구의 관리 사각지대 소멸
- ✓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는 재정누수 현상에 대한 기존의 개별법 개정 중심의 관리 방식 한계극복

2

법률제정의 기대 효과

징벌적 환수의 표준적 적용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부정이익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도덕적 해이 차단
- ✓ 정부돈은 눈먼돈이란 그릇된 인식과 개별법령 중심의 허술한 제도하에서 나타난 온정적 처리 관행 일소

3

다양한 실효성 확보 장치와 적극적 신고자 보호 보상

- ✓ 금전적 불이익 외 사업참여 제한, 명단 공표 등 관리수단을 통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최고 20억원) 체계로 은밀화된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신고 활성화

4

감사합니다





중대조직범죄 대응 전략

■ 마틴 크레이고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아시아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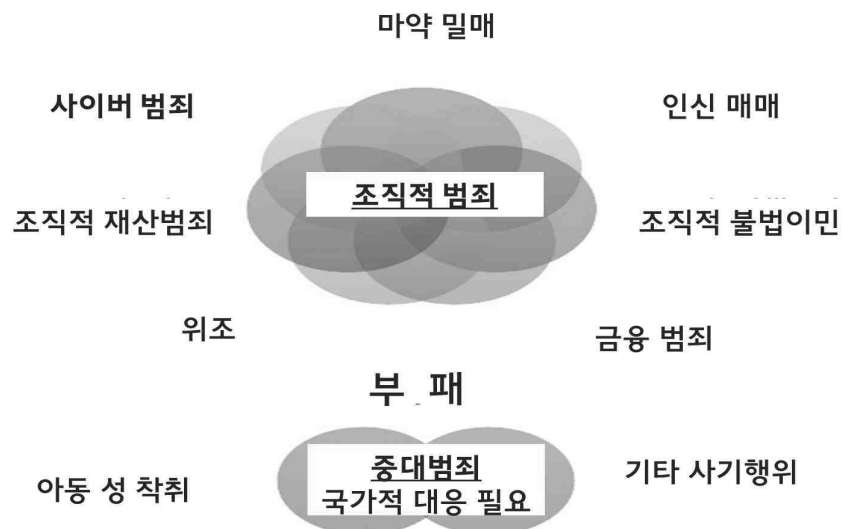
영국의 중대조직범죄 대응 전략

마틴 크레이고 **Martin Crago**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아시아 지역 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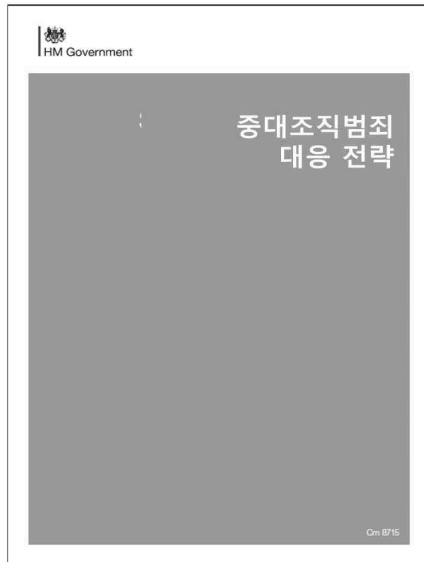
한-영 반부패 세미나
2014. 12. 9.

OFFICIAL

중대조직범죄(Serious and Organised Crime)



중대조직범죄 대응 전략



- 2013년 10월 발간
- 주요 목표: 영국과 영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감소

중대조직범죄 - 위협

특징

- 사회안전에 대한 위협 : 사회를 근간을 침해하여 위협을 확산
- 마약밀매, 인신매매, 불법이민, 화기범죄, 사이버범죄, 사기, 부패, 위조, 자금세탁, 조직재산범죄, 아동성착취 포함
- 경제 및 금융 제도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저해

규모

- 수사 통계(추정치) - 조직범죄단체 약 5,500개, 약 37,000명 연루
- 영국 내 연간 최소 240억 파운드의 비용 초래
- 복잡하고 급속히 진화하는 위협. 조직적 범죄자들은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활동

정부의 대응전략

수사활동의 개선

- 국가범죄수사국
- 지방의 조직범죄 수사를 위해 1천만 파운드 자금 지원

전략 및 정책적 측면 강화

- 새로운 4 'P' 전략 채택
*테러방지 전략(CONTEST)에서 유래
-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중대조직범죄 대응 전략

- **PURSUE**(추적)
 - 조직중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를 기소하고 저지
- **PREVENT**(예방)
 - 중대조직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
- **PROTECT**(보호)
 - 중대조직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보호 강화
- **PREPARE**(준비)
 - 범죄 발생 시 영향을 감소

국가범죄수사국 (NCA)

영국 정부의 중대조직범죄 방지 활동을 선도



OFFICIAL

국가범죄수사국 (NCA)

- 2014. 10. 7. 구성
 - 구 중대조직범죄수사국(SOCA)
 - 직원 수 : 약 4천명
 - 5개 부서로 구성:
 - 경제범죄수사부(Economic Crime Command)
 - 국경경비부(Border Policing Command)
 -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부(CEOP Command)
 - 국가사이버범죄수사단(National Cyber Crime Unit)
 - 조직범죄수사부(Organised Crime Command)
- 기타 영국 인터폴 국가중앙수사국(NCB), 영국인신매매센터(UKHTC)



OFFICIAL

2013 중대조직범죄 대응 전략

- “NCA가 조직범죄에 의한 뇌물과 부패에 대한 대응을 선도...”
- “경제범죄수사부는 뇌물과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활동을 보다 폭 넓게 감독 (수사기관 내부 부패 제외)”



OFFICIAL

NCA 경제범죄수사부 중점과제

4대 중점 분야:

- 자금세탁 및 자산회복
- 부패 수사 및 제재
- 중대하고 조직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 경제범죄 실행 환경을 개선

NCA 경제범죄수사부-뇌물 및 부패 3대 분야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 해외로부터의 부패 수익
- 국내 뇌물 및 부패
(수사기관 내부 부패 제외)



OFFICIAL



해외뇌물과 부패

-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 런던시경찰청(City of London Police): 해외반부패과
- 런던경시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부패수익과
- NCA: 국제부패정보과
- NCA: 경제범죄수사부 뇌물부패팀



Security Marking

해외 부패

- 협력기관 수사 지원:
 - NCA 전문가 풀 활용
 - NCA 전국 지문 정보 활용
 - NCA 국제 연락망 활용
- 신규 MOU 및 사건 등록 시스템 개편
- 정보 협력



뇌물과 부패 사건

- SFO(중대비리조사청)의 수사(이라크, 인도네시아)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중국 지사
-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권의 붕괴
- 스포츠 부패 / 승부 조작





NCA 중국사무소 연락처

북경 사무소

Martin Crago

아태지역 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북경)

David Giles

국제협력자문관 (북경)

광조우 사무소

Martin Blair (Lionel)

국제협력담당관(광조우, 홍콩)

Min Li (Mindy)

국제협력자문관(광조우, 홍콩)



OFFICIAL

질의 응답



OFFICIAL



한국과 영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 제도

■ 전용 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과 영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 제도

2014년 12월 9일

전용일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CONTENTS

I.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의 배경 필요성 및 의의

II. 한국의 복지부정 대응 체제

III. 영국의 복지부정 대응 체제

IV. 한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 발전방향

I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

1. 복지부정 방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 I

-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복지역할이 부각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복지예산은 2009년 80조 4천억 원이던 것이 2014년 106조 4천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전체예산대비 복지비중도 당해 기간 동안 3.3%(26.6%→29.9%)가 증가
- 정부의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공공서비스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부정수급의 형태와 가능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 복지부정 특성의 복잡다기화와 다양한 유형의 복지재정누수 발생
 - 최근 들어, 비복지 보조금 분야에 대한 예산과 수급대상의 확대로 인해,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 복지정책의 확대가 도리어, 정부의 복지 및 비복지 보조금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상황을 양산

2. 복지부정의 특성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 I

개 념	요 인
지능화 및 전문화	이해관계자(신고자, 피신고자, 관계부처 및 기관)간 정보의 비대칭성
은밀화 및 구조화	복지 및 보조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예: 눈 먼 돈)의 집단화 경향
장기화 및 연속성	부정수급에 대한 중독성 → 근원적 차단 필요
비배재성	이용자배제가 어렵고 사회적 안전만을 고려할 경우 무임승차를 통한 비배제성 발생 가능 →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엄중 · 가중처벌 필요

5

3. 복지재정누수 유형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 I

• 단계별 주요 복지재정누수 유형

단계	누수유형	원인
수급자선정단계	무자격자 선정	자료부재/부실, 정보시스템 연계부족, 자료입력/관리오류, 허위신고
	부정적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불합리, 허위진단서/증명서발급
공급/이용 단계	무자격이용	이용자격 사전체크 시스템부재
	허위과다청구	허위실적보고, 제공자와 이용자 간 묵인/담합, 제도 허점 이용
	불법적 서비스 공급	불법유인 알선 등
	무자격자 공급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서비스 중복수급	제도/시스템간 연계 미흡
사후관리 단계	자격변동 적기 미반영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 확인 및 적용 지연
	자격상실처리지연	사망 신고 지연
	채납관리소홀	관리인력 등 역량 부족

6

- 많은 선진국가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독립된 기관을 창설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사전인식·예방·조치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 부정수급부처·기관 등 유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기준을 설정
 - 이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예방·조사·처리틀(framework) 마련을 통한 신고사건 처리결과와의 체계성·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종합적 조사분석체계 확보 및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 공공부문에서 부정수급을 관할하는 전담기관 운영

국가	기관
영국	• National Fraud Authority (NFA) 등 • 부정수급을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며, 부정수급방지책을 진행할 도구를 마련하고, 정부·국민·기업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 • 세금관련 부정수급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발휘
미국	• Public Assistance Fraud Unit (PAFU) 등 • 부정수급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state)정부 등에서, 수급자에 대해 정기적 조사와 비정기적 조사방식을 병행 사용 • 공공부조 담당 공무원들이 자금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 PAFU에서는 정규부정수급조사와 조기예방복지수급조사 두 가지 형태의 조사를 진행
스웨덴	• Sweden Social Insurance Agency 및 National Labour Market Board 주축 • 부정수급 근절업무 및 관련 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 • 정부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 복지제도 재신청에 대한 규정 검토 • 부정수급 특별반 구성 등
캐나다	• the United Council on Welfare Fraud (UCOWF) • 전문가들의 교육훈련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식별하여 조사하고 소송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공공부조프로그램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 •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정수급자제를 줄이는데 협력하도록 조치

- 부정수급근절 추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공익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신고 자체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일원화된 통합신고 체계의 구축 필요
 - 기존에 복지분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범부처 통합신고·처리 체계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노정되었음
 - 부처별 내부적 신고처리로 인해 객관성과 전문성에서 한계가 나타났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절차를 통해 접수된 복지 및 비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국민의 건의를 반영하여 사회적 문제를 근절하고, 사각지대해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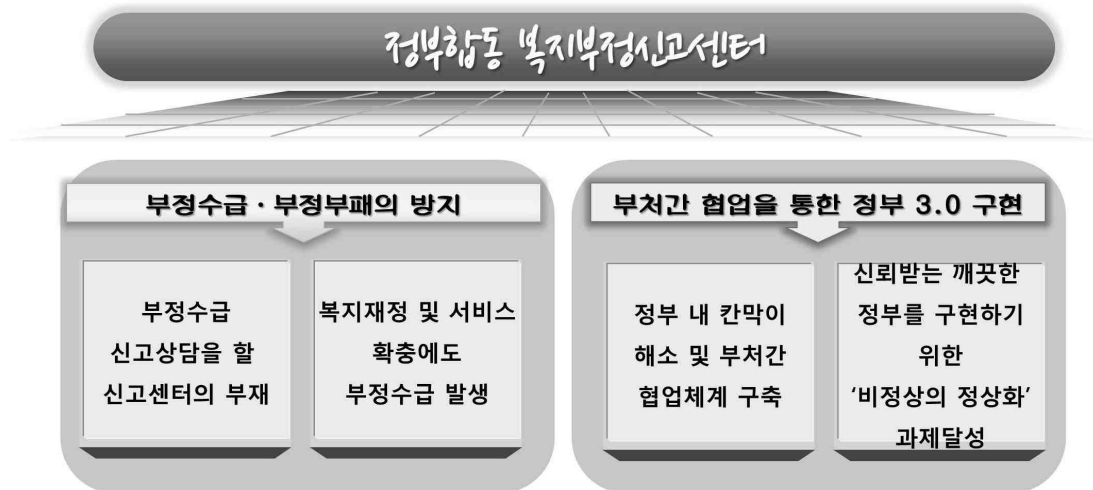
II

한국의 복지부정 대응 체계

1.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추진 배경

한국의 복지부정 대응 체계 II

-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개소하면서, 국민들이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신고상담·처리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11

2.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개요

한국의 복지부정 대응 체계 II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조직 및 업무

조직	업무
기획홍보반	센터 관리 및 운영, 기획총괄,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상담안내반	신고관련 상담·안내, 신고접수 및 분류 등
조사처리반	신고사항 사실 확인(조사), 위원회 상정 안건 작성, 조사기관 이첩, 결과 통지 및 통계관리, 제도개선 등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주요 신고 특징 및 유형 (20여종 내외)

구 분	사 례
부정수급 특징	정부 비대칭성으로 인한 지능화 및 전문화, 집단화 경향으로 인한 은밀화 및 구조화, 장기화 및 연속성 강화
주요 신고 유형	❖ 복지분야: 기초생활수급부정, 요양급여부정, 보훈연금부정, 사회적일자리(사회적기업 등) 관련 보조금 부정,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등 ❖ 비복지 보조금 분야: 조세포탈(국세청 업무영역), 조달업무 등

12

-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한 부정수급규제주체로서의 정당성 및 규제의 강제력 확보
 - 부패행위의 예방과 효율적 규제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신고사건 처리에 직접 개입함
 - 신고자(국민)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으로서, 타 부처에 비해 국민보호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
- 정부 부패 감시 역할과 객관성을 갖춘 제3자 독립기관
 - 각 부처의 부패 감시 및 척결 역할 수행. 소속부처와 관련된 부정수급사건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부처 파견 공무원에게 맡기지 않으나, 전문성 차원에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
 - 궁극적으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부정수급자 및 지급기관에 대한 감시를 동시에 수행
 - 복지 및 보조금 주무부처·기관으로의 이첩/송부 이전에 신고센터 차원에서 자체조사 실시. 제3의 독립감시기관에서 객관성을 확보한 조사를 추가 실시함으로써, 조사결과와 신뢰성 확보

- 주요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신고통합 핫라인(Hotline)’ 운영
 -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신고 활성화, 조사의 객관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설치
 - 핫라인-부처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신고된 사항을 해당 사업 주관부처와 기관에 전달. 조사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동기부여 확대 및 홍보 활성화
- 관계부처·기관과 관계없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모든 신고사건에 대한 종합적 자료수집 가능 (부처별 자체운영신고센터에서 각 부처 관련 신고사건만을 다루는 것과 차별)

4. 국내 부정수급신고 처리절차 비교분석

한국의 복지부정 대응 체계 II

• 부처별 주요 처리절차 비교

처리단계	부처명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보건복지부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
1단계	신고 (신고자)	신고 (신고자)	신고 (신고자)
2단계	신고상담 및 접수	신고상담 및 접수	신고상담 및 접수
3단계	사실확인 (자체조사)	실태파악	사업장 및 관련자 조사
4단계	권익위 이첩	유형별로 보건복지부 혹은 지자체 이첩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제출통지
5단계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보건복지부 직접 감사 혹은 감사원 감사청구)	부정수급 처분
6단계	권익위에 조사결과 통보 (조사·수사기관)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5단계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결과 통지 및 포상 절차 안내
7단계	신고자에게 처리결과통보, 포상금지급,사후통계관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5단계에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실시 등	포상금 신청 및 지급

15

III 영국의 복지부정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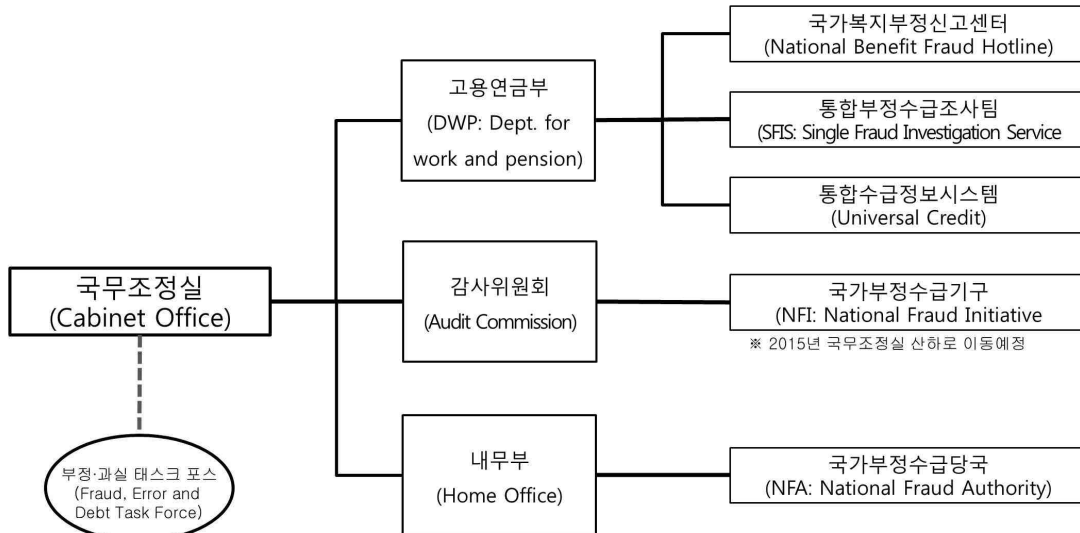
- 부정수급 규모 (2013년 4월~2014년 4월)
 - 복지비 총지출 1,639억 파운드의 2.0%인 33억 파운드가 과다지급
 - 이 중, 부정수급 규모는 11억 파운드로 추정 (총지출 대비 0.7%)
- 주요 법령
 - 사회보장관리법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
 - 공익신고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 복지개혁법 (Welfare Reform Act 2012)
 - 사기행위방지법 (Fraud Act 2006)
- 영국국가표준
 - BS 10500 : 조직이 뇌물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경영시스템 요건을 규정
 - ✓ P(Plan, 계획)–D(Do, 실행)–C(Check, 평가)–A(Act, 개선) 모형에 의거한, 뇌물방지경영 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MBS) 실행
 - ✓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영시스템표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도 BS10500을 기초로, 2016년까지 ISO 37001 제정 추진)

- 사기행위의 정의
 -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손실을 입힐 위험을 초래할 의도가 있을 경우, 사기죄 성립
 - ✓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 혹은 병과

• 사기행위의 법적 유형

조항	유형
제2조	허위표현에 의한 사기
제3조	정보미공개에 의한 사기
제4조	직위남용에 의한 사기
기타	▪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물품이나 정보를 보유·제작·공급하는 행위 ▪ 사기성 상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 부정직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획득하는 행위 등

• 주요조직연계



• 주요조직연계(계속)

-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정부 전반의 복지부정을 포함하여 사기행위 관련 업무총괄
- 부정·과실 태스크포스(Fraud, Error and Debt Task Force): 범정부차원의 복지 부당청구를 포함한 사기행위 규제
- 통합부정수급조사팀(SFIS): 모든 복지 부정수급 조사 전담. 고용연금부, 국세·관세청(HMRC: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및 지방정부 합동운영
- 통합수급정보시스템(Universal Credit): 실시간 소득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허위·부정청구를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시범운영 중
- 국가부정수급당국(NFA): 부정수급사전인식·예방·방지책 마련 및 정부·국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부정수급 예방·중단·집행·집행·피해자 지원 중점 수행
 - ✓ FFT (Fighting Fraud Together) 이행
 - ✓ 2015년까지 14억 파운드 부정수급액 절감 목표 달성 근간 마련

• 조사 및 처리

절차	개요
신고	- 고용연금부(DWP) 산하 국가복지부정신고센터(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 자체 운영 - 주요 신고방법: 전화, 우편, 온라인, 익명신고 - 주요 신고단계: 조직내부 보고절차에 따른 사용자 신고→내각각료 및 규제기관 등 담당 정부기관 신고 - 신고자: 근로자 (국가보안관련 종사자, 경찰공무원, 의회직원 등 제외) - 신고자보호법(공익신고법) 및 기관 - 공익신고법: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개인을 보호하고, 그 신고자가 받는 보복 행위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 주요 기관: PCAW(Public Concern at Work)
조사	- 복지급여 지급의 합당성, 법위반 여부 등 조사 - 고용연금부(DWP)는 사회보장관리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경찰과 유사한 조사권한 보유
환수	- 사회보장관리법 제71조 /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근거하여 추진 - 환수금액 일부는 조사당국에 장려금으로 지급
제재	과태료(Civil Penalty), 과징금(Administrative Penalty), 기소(Prosecution), 급여상실(Loss of Benefit)

• 부정 · 과실 수급 대응전략

- 예방(Prevent)→감지(Detect)→정정(Correct)→처벌(Punish)→억제(Deter)의 5단계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탄력적 대응체계 수립
- 수급자책무(Claimant Commitment) 신설FFT (Fighting Fraud Together) 이행
 - ✓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연령층에 대한 수급조건 강화. 미이행 시 급여감소 등 제재 강화
- 기타: 반부정수급담당자를 위한 특수워크숍 운영 및 '부정수급 챔피언' 선발 등 인센티브 구조 보유

IV 한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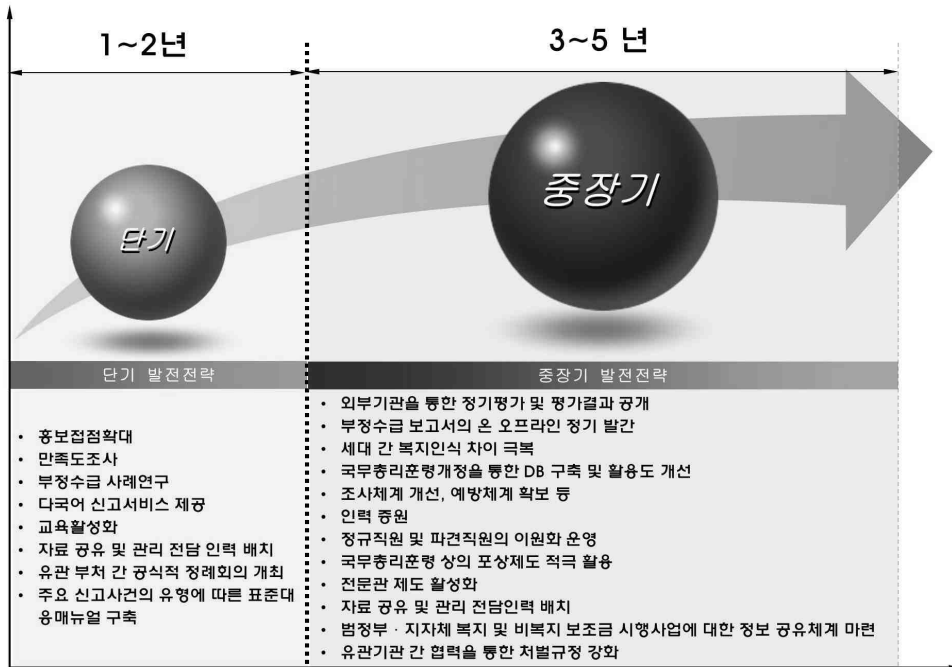
1.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발전방향

한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 발전방향 IV

- 한국과 영국의 복지부정 방지제도 관련 현황, 법령, 유형, 대응조직 및 체계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복지부정 대응 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
-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부정수급신고처리 업무영역 확대, 유관기관 협력방안, 인력운영방안, 보조금업무 추가수행 등 주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발전방향을 기간별로 고려하여 구성한 단기·중장기 발전전략 고찰

2. 한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의 복지부정청구 방지제도 발전방향 **IV**





부패수익의 환수

— 제임스 이보리와 관련자 수사

■ 피터 클라크

영국 런던경시청 경제범죄수사관

피터 클라크 수사관 DC Peter Clark

런던경시청 부패수익조사반
Proceeds of Corruption Unit (POCU)
Room 466 Victoria Block
New Scotland Yard, London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런던경시청 부패수익조사반 투린(Tureen) 작전



전 나이지리아 주지사
제임스 이보리
(James Ibori)와
관련자 수사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정치 부패의 영향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제임스 이보리 James IBORI 나이지리아 델타주 주지사로 선출 1999 - 2007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제임스 이보리의 여권 1962년 8월 4일생

DESCRIPTION SIGNALEMENT	
Bearer Titulaire	
Profession Profession	COMPANY DIRECTOR
Place and date of birth Lieu et date de naissance	MOSOGAR 4-8-62
Height Taille	1.72 M.
Colour of eyes Couleur des yeux	BROWN
Colour of hair Couleur des cheveux	BLACK
Special peculiarities Signes particuliers	-
Thumb print of bearer Empreinte	
	
Name of bearer Nom du titulaire	Mr. O. J. IBORI

1989년
혼인신고서상
생년월일과
일치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제임스 이보리의 여권 1958년 8월 4일생

DESCRIPTION SIGNALEMENT	
Bearer Titulaire	
Profession Profession	POLICE CONSULTANT
Place and date of birth Lieu et date de naissance	MOSOGAR 04-08-58
Height Taille	1.74 M.
Colour of eyes Couleur des yeux	BROWN
Colour of hair Couleur des cheveux	BLACK
Special peculiarities Signes particuliers	NONE
Thumb print of bearer Empreinte	
	
Name of bearer Nom du titulaire	Mr. O. J. IBORI

미국 비자 취득
및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전과를 숨길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변경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나이지리아 경제금융범죄 위원회 Economic and Financial Crimes Commission

나이지리아의 부패방지를 위해
오바산조 Obasanjo 전 대통령이 2002년에 창설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행동강령국 CODE OF CONDUCT BUREAU

정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유지
공직자의 행동과 자세가 최고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부합하도록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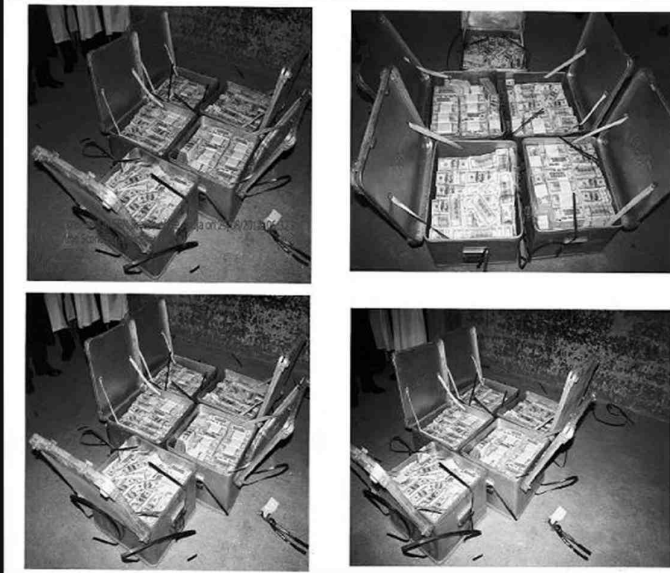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뇌물공여 시도 - 경제금융범죄위 위원장



- 이보리가 리바두 Ribadu에게 1천5백만 달러의 뇌물 공여 시도
- 나이지리아에서 몰수 대상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조력자 - 바드레쉬 고힐 Bhadresh Gohil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이보리 부부 소유 영국 도르셋의 부동산

(주소 : 42 Great Ground, Shaftsbury, Dorset)



이보리 부부가 2005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자녀들이 다니는 포트 리지스 사립학교 인근

고힐이 부동산 양도 담당

우도 오누이그보 Udo ONUIGBO가 제3자인 HSBC 은행의 수표로 3십1만1천 파운드에 부동산 구입

변호사는 고객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이보리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를 40만 파운드에 구입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고힐은 이보리를 위해 개인 전용기 구매 계약을 진행

- 에도주 주지사가 폭격기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짐
- 이보리는 경쟁적으로 보다 더 크고 좋은 비행기를 구매하도록 고힐에게 지시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관련자 – 내연녀

사우스워크 형사법원 건물 앞에서
우도아마카 오누이그보 Udoamaka Onuigbo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우도의 위장 '회사'

- 사지콘 Sagicon 나이지리아
 - 리브베드 Rivvbed 나이지리아
 - 사가리스 Saagaris 가구
- 이 3개 회사만이 델타주 발주 계약에 입찰
본사는



TOTAL POLICING



사지콘 나이지리아 라고스 본사



TOTAL POLICING



라고스에서 오코론코 OKORONKWO가 운전하는 차량
델타주의 자금으로 플로리다에서 구입
리브베드사가 부풀린 계약으로, 이보리가 허가하여 구입한
4대의 장갑 차량과 차량번호로 연관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조력자 – 역외 포트폴리오 – 건지섬



엘리아스 프레코 Elias Preko –
가나 출신 전 골드만삭스 은행원



건지섬에 이보리를 위한 포트폴리오 형성

골드만삭스에 계좌 개설 실패

포트폴리오로 사지콘사로부터 5백만
달러를 수수(델타 계약 수수)

1997년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아바차 Abacha 계좌 개설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이보리 부부의 부동산

남아프
리카
공화국



영국
도르셋



나이지리아



런던
햄스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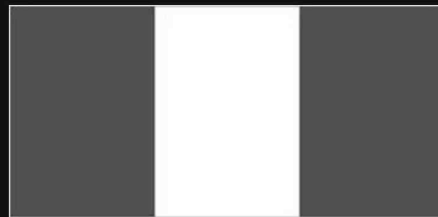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유죄선고



내연녀 우도아마카
오누이그보
5년 징역형 및 2백7십만
파운드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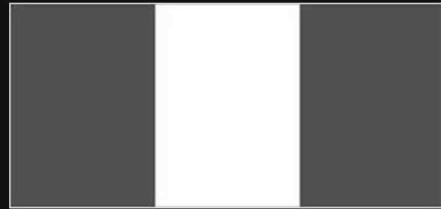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유죄선고



여동생
크리스틴 이보리-이비에
5년 징역형 및 8십7만6천
파운드 추징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유죄선고

부인



테레사 이보리
5년 징역형 및
5백1십만 파운드
추징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유죄선고

변호사



바드레쉬 고힐
10년 징역형 및
현금회수 가능한
자산 4천만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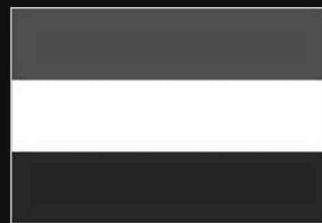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유죄선고

영국인 수탁인



베르트 드 보어
30개월의 징역형
159,898.80 파운드 납부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유죄선고

수탁인 - 저지섬



다니엘 맥칸
30개월의 징역형
45,114.12 파운드 납부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유죄선고

머천트 은행 직원



엘리아스 프레코
4년 6개월의 징역형
가나에서 자금몰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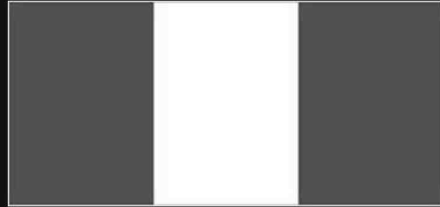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유죄선고

주범



제임스 이보리
13년의 징역형
4천2백만 파운드의
자산 보유 파악
2억5천만 파운드
이상의 자금 은닉 추정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유죄선고 전 제임스 이보리의 모습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2012년 두바이에서 런던 히드로로 범죄인 강제송환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질의 응답



METROPOLITAN
POLICE

TOTAL POLICING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보호 등급 - 제한		작성번호:
제목: 제임스 이보리와 관련자들 James Ibori & Associates		
개요: 서울에서 발표		
부서 / OCU: SCD6 – POCU		
작성일자: 2014년 6월 4일	검토일자: 2014년 9월 4일	버전: 1
작성자: DC Peter Clark 186869		



**METROPOLITAN
POL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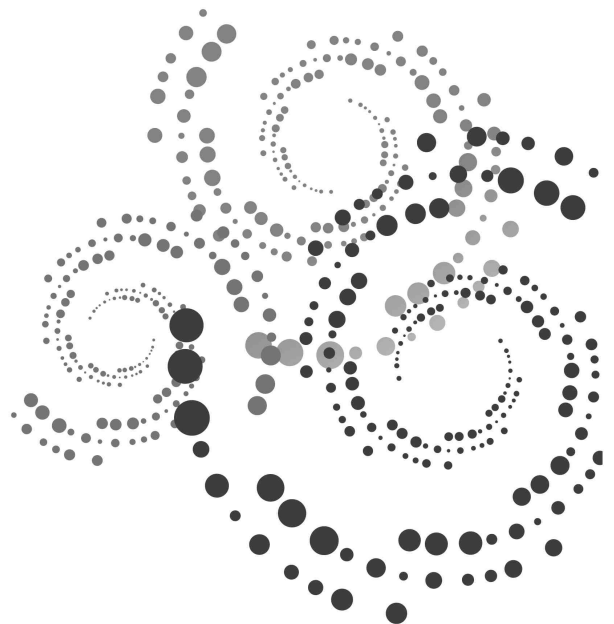
TOTAL POLICING



한·영 반부패 세미나

0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

■ 주 경 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서기관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심사정책과 서기관
주 경 희

목 차

I 개요

II 한국의 신고자 보호체계

III 신고 사례

IV 마무리

공익신고

I. 개요



1972년 미국
Watergate scandal



1989년 영국
Piper Alpha Accident



2000년 주한미군 군무원의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 제보

외국의 신고자 보호

I. 개요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연혁

I. 개요



II. 한국의 신고자 보호체계

개별법에 의한 보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한 보호

-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령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폭력조직 범죄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II. 한국의 신고자 보호체계

부패신고 vs. 공익신고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적용 법률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2.1.25.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9.30. 시행)
신고 대상	- 공직자 직무관련 부패 - 공공기관의 계약·예산·재산 관련 부패 - 상기 사항의 강요, 권유, 유인, 은폐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180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기관	권익위, 조사·수사기관, 감사원 등	기업, 관련 공공단체, 국회의원, 권익위, 조사·수사기관, 감사원 등
신고 주체	누구든지 (외국인 포함)	좌 동
신고 방법	기명신고	좌 동

II. 한국의 신고자 보호체계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된 경우
경위 확인 및 관련자 징계
요청(공익신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밀보장 위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신변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조치 요청

경찰관서의장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II. 한국의 신고자 보호체계

신분보장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금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금지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자 형사처벌

책임감면

형 및 징계의 감경, 면제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배제
손해배상의 청구금지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I. 한국의 신고자 보호체계

보상·포상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보상금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 지급한도액 20억원 내에서 보상 대상가액의 4~20% 지급	좌 등 * 지급한도액 10억원 내에서 보상 대상가액의 4~20% 지급
구조금	 -	신고로 인한 피해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 •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에 따른 이사비, 쟁송비용 등
포상금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없어도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신고자 보호현황

II. 한국의 신고자 보호체계

[부패신고자 보호]

연도	합계	'02-'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181	37	15	17	20	14	13	11	27	27
신분보장	146	30	12	15	18	12	9	11	19	20
신변보호	22	6	2	1	2	2	3	-	2	4
신분공개	13	1	1	1	-	-	1	-	6	3

[공익신고자 보호]

연도	합계	'11.	'12.	'13.
합계	32	6	10	16
신분보장	23	4	6	13
신변보호	4	-	3	1
신분공개	5	2	1	2

(단위:년,건수)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부패신고 사례

III. 신고 사례

사례 1. ○○연구원 출장비 횡령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의 임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은 채 출장비를 받거나 출장 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출장비를 정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횡령
- 관련자 9명 기소유예, 소속직원 135명 징계 및 훈계조치, 출장비 3,322만원 환수
→ 보상금 644만원

사례 2.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가시시설물 설치구간에 가시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설치한 것처럼 공사대금 약 50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 관련자 7명 징역형, 공사대금 등 약 55억원 환수
→ 보상금 4억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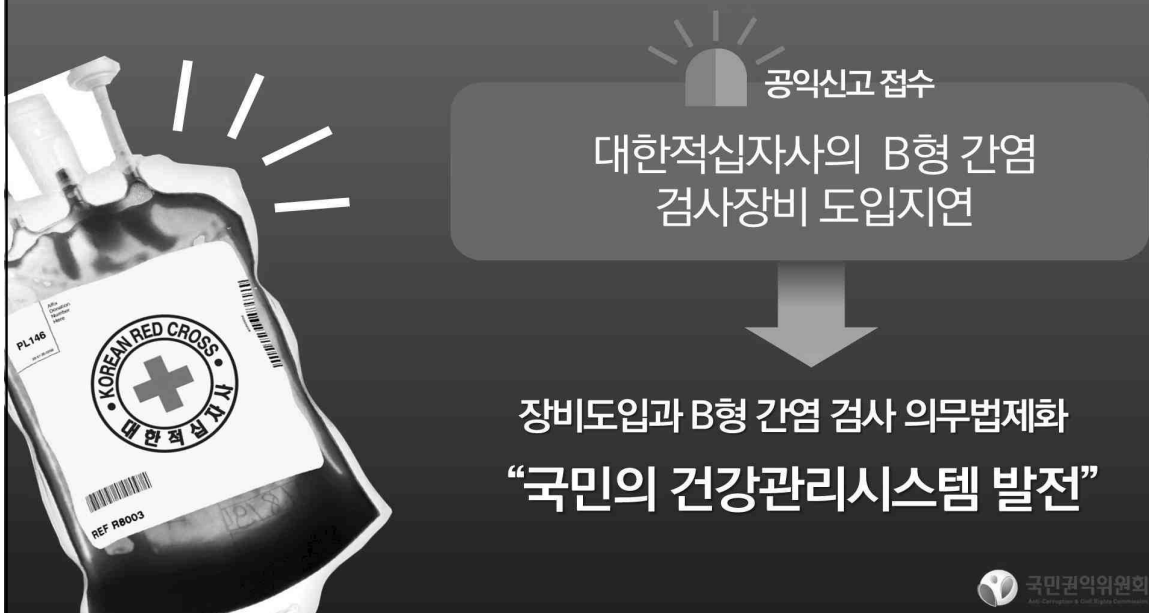
Ⅲ. 신고 사례

공익신고 사례 1



Ⅲ. 신고 사례

공익신고 사례 2



남은 과제

Ⅳ. 마무리

신고자 보호 강화

- 부패신고 :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 신고자 책임감면 요구권
- 공익신고 : 신분공개경위확인, 책임감면 범위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개정 (’13.9월 국회제출)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확대(180개 → 280개)
- 보호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포상금제도, 양벌규정 도입 등

신고자 보호 제도 통일

-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로 나뉘어 있는 현행 법체계 개선

신고시스템 구축

- 신고기관별(행정기관, 조사기관, 민간기업, 국회의원 등) 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영국 공익신고보호법과 PCaW의 역할

■ 샘 베러켓

영국 PCaW 법무연구원

Making **whistleblowing** work

성공적인 내부고발



2014. 12. 9.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Public Concern at Work

PCaW는 1993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자선단체(charity)

- 직장 내에서의 비리에 관한 **문제 제기**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무료 비밀 상담** 제공
- 공익신고 관련 정책과 법에 관한 **교육**
- 공공정책에 관한 캠페인
- 공익신고 관련 법령의 홍보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내부고발의 현재

- 2007~2008년 금융위기
- 보건, 의료, 언론, 금융, 소매 분야에서 비리 발생
- 첼시 매닝(Chelsea Manning)과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국가기밀 관련 내부고발
- 2010년 뇌물방지법(Bribery Act) :
 - 관계자의 뇌물공여를 예방하지 못한 영리단체에 대한 새로운 범죄 규정(제7조)
 - 관계자의 뇌물공여 예방을 위해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를 마련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 가능
 - 뇌물공여 범죄에 대한 면책을 위해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는?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상담 분야

현재까지 내부고발자 **17,000여 명** 대상 상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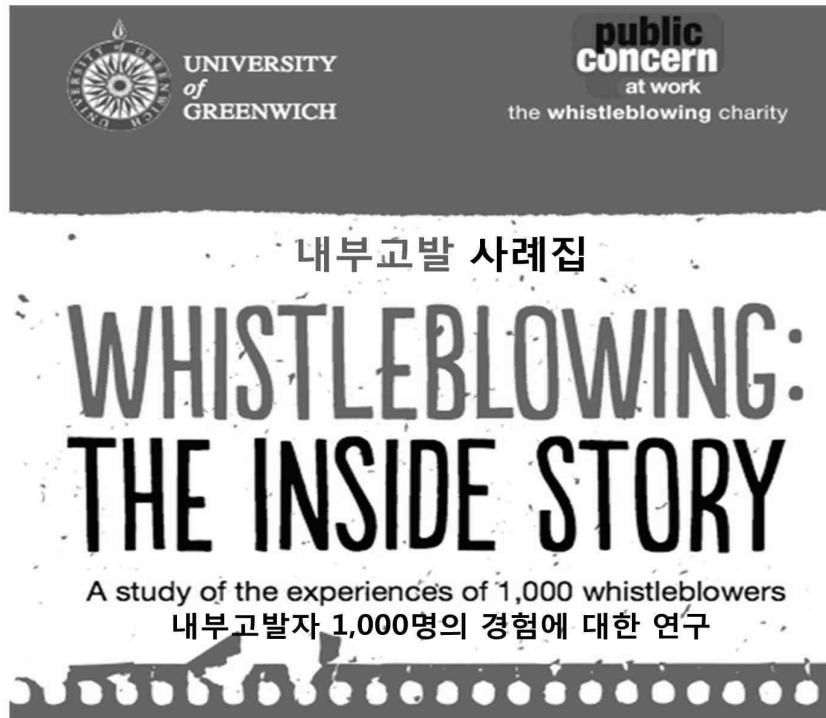
주요 내부고발 분야 : 재무 비리, 공공안전, 환자의 안전

주요 산업 :

교육
지방정부
소매 레저/접객 자선 금융
돌봄 서비스 보건

Source: PCaW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오해 1: “내부고발자는 집요하다”

- 내부고발자 중 다수(44%)는 한 번만 문제를 제기
문제 제기를 반복한 경우는 39%에 불과

오해 2: “내부고발자는 정보를 외부에 폭로한다”

- 내부고발자 중 83%는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
- 설문조사(YouGov 2013) 결과, 영국 성인 근로자의
대다수(83%)가 직장 내에서 부패, 위험, 심각한 비리가
의심될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오해 3: “내부고발자는 언제나 비난받는다”

- 상담 대상 중 **60%**는 경영진이 자신에 대해 아무런 (부정적 또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함
- 경영진이 조치를 취한 경우(**40%**), **징계보다 가벼운 수준의 조치**가 가장 보편적
- 설문조사(**YouGov 2013**) 결과, 영국 근로자의 대다수 (**72%**)는 내부고발자를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인식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EY 기업 설문조사 주요결과

- 응답자 중 **93%**는 조직 내에 공식적인 내부고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
- 그러나 **3명 중 1명**은 조직 내 내부고발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
- **54%**는 내부고발 접수를 담당하는 주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
- **44%**는 개인적인 고충과 내부고발을 혼동
- **10명 중 1명**은 고위급 임원이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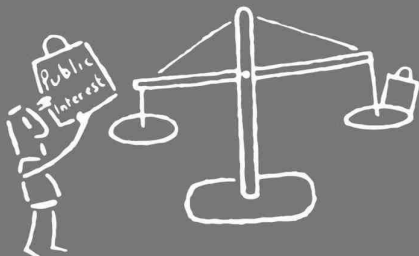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국제투명성기구(TI) 2014 반부패 보고서

- 조사 대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부패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설명
- 조사 대상 모든 영국 기업들은 반부패 법규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전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강령 또는 반부패 정책, 내부고발 제도를 보유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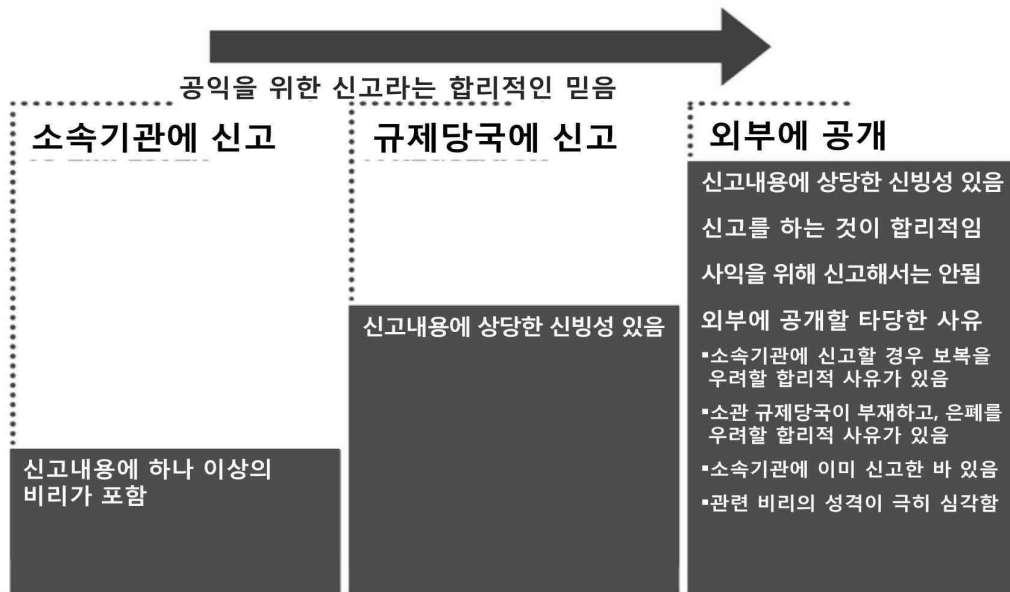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공익신고법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공익신고법 1998



Lord Nolan은 "공공의 이익과 소속기관의 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이면서도 미묘한 균형을 매우 훌륭하게 달성"하였다고 호평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공익신고법 개정

2013. 6. 25. 공익신고법 개정

공익신고법에 따른 "보호 대상" 신고를 **신의성실** 신고에서 **공익** 신고로 대체

신의성실 여부는 승소 후 보상금을 지급할 때만 적용
 (보상금 청구자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법원은 보상금의 **최대 25%**를 공제할 수 있음)

내부고발자를 괴롭힌 직원에 대한 책임

- 고용주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고용주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 가능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내부고발위원회: 주요 권고사항

- 장관은 내부고발위원회의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채택할 것
- 법원은 내부고발 사건 심판 시 동 실천강령을 고려할 것
- 규제당국은 규제대상기관에 동 실천강령의 채택을 요구 또는 독려할 것
- 규제당국은 자체 내부고발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것
- 내부고발자 블랙리스트화를 금지하는 특수 조항
- 관련 법에 비리에 대한 함구 강요를 방지하는 조항을 강화
- 내부고발 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판사 대상 특별 교육을 실시
-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명확화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내부고발위원회: 실천강령 (1)

- 내부고발 제도를 마련할 때 고용주, 직원, 대표자들과 협의하고, 내부고발 제도는 명확하고 공개적이어야 함
- 관련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유형을 파악할 것
- 신고처(사람 및 기구)의 목록을 작성할 것
-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신고 처리 방법과 담당자, 조사 기간, 그리고 가급적 조사 결과에 대해 통지할 것
- 내부고발자들에게 괴롭힘과 비밀보장에 관해 안심할 수 있게 하고, 내부고발자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
- 독립적인 자문을 받을 권리

©PCaW 2014- 00 44 20 7404 6609

내부고발위원회: 실천강령 (2)

- 내부고발제도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할 것
- 내부고발제도의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질 사람을 지정할 것
- 이사회, 위험평가 위원회 등에 의한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과 평가를 확보할 것
- 연차보고서에 내부고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 내부고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

©PCaW 2014- 00 44 20 7404 6609

정부 협의 결과

- 규제당국은 접수한 내부고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
- 정부는 내부고발의 딜레마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침 제공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우수사례를 실천하도록 지원
- 내부고발자 보호의 범위를 간호실습생에게로 확대
(비상임 이사, 합의제기구 위원(public appointments), 자원봉사자, 인턴, 군대 및 국가정보기관 직원 등은 예외)
-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에서 규제당국으로의 회부 절차를 검토

의미있는 개혁을 위한 기회 상실?

©PCaW 2014 - 00 44 20 7404 6609

감사합니다



Sam Bereket
sb@pcaw.org.uk
0203 117 2520

자세한 정보는 PCaW 홈페이지 참조
www.pcaw.org.uk

©PCaW 2014 - 00 44 20 7404 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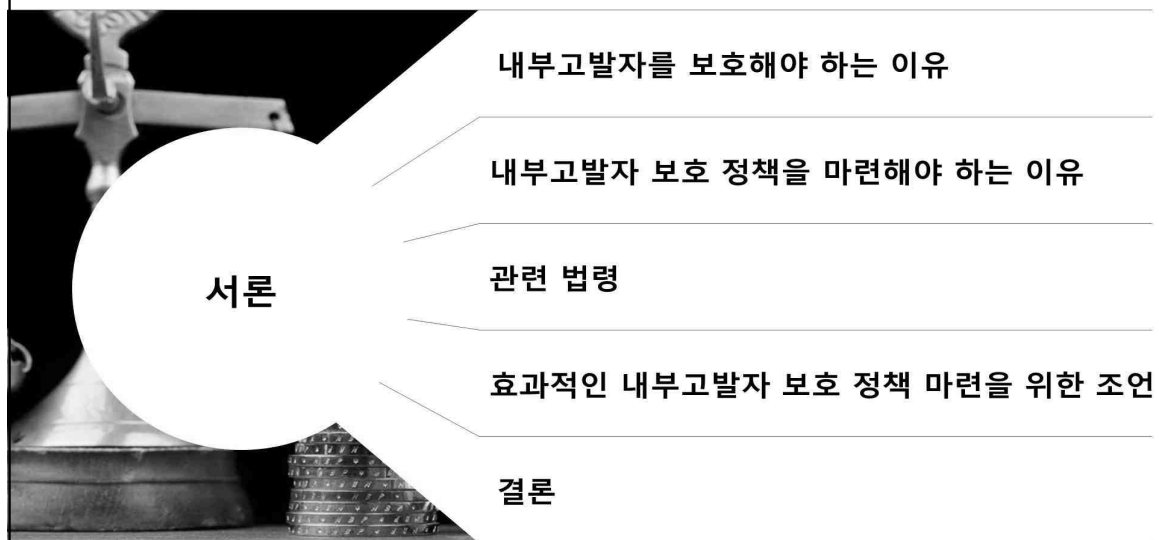
효과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의 마련

■ 토마스 월쉬

영국 클리포드채스 변호사



서론



배경 :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 문화의 변화를 유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리스크에 대한 내부 통제
- 외부 고발의 방지
- 형사적 책임의 방지
- “내부” 소송 및 직원의 사기 저하 방지

관련 법령 개관



공익신고법(PIDA 1998) 및 그에 따른
고용권리법(ERA 1996) 개정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

법무부의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에
관한 지침

턴불 가이드런스(Turnbull Guidance 2005)

영국공인회계사회(ICAEW) 지침(2004)

제5원칙 및 제6원칙 : 의사소통, 감독과 심사

제5원칙 : 의사소통

- 뇌물방지절차는 조직 내부 및 외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 기업은 신규직원 대상 교육 등 일반 교육과 함께 특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직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원칙 : 감독과 심사

정기적인 절차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기적인 경영 보고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단체는 외부심사의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활동의 성격 변화와 규모에 적합한 방식으로 절차를 심사해야 한다
- 정부의 변화, 뇌물 혐의,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 따라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효과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마련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직원들이 조기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장려할 것

직원들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하고,
분명한 절차를
마련할 것

내부고발자가
보호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정책 마련을 위한 조언



1 단순하게 할 것

2 신고 대상 행위를 고려할 것

3 조기 신고를 장려할 것

4 규제당국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을 고려할 것

내부고발자 보호



1 지원과 지침을 제공

2 신고자의 비밀 및 익명신고를 보장

3 관련 조사 진행 시 동료직원의 동행을 허용하고, 분명한 기록을 작성

4 조사 실시 방향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

5 피드백과 시정조치를 실시

6 불만족할 경우, 상부/외부에 신고하는 방안을 제시

국가별 사무소 연락처 26개국, 36개* 사무소

Abu Dhabi
Clifford Chance
9th Floor
Al Sila Tower
Sowwah Square
PO Box 26482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Tel +971 (0)2 613 2300
Fax +971 (0)2 613 2400

Amsterdam
Clifford Chance
Droogbak 1A
1013 GE Amsterdam
PO Box 201
1000 AG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31 20 7119 000
Fax +31 20 7119 999

Bangkok
Clifford Chance
Sinthorn Building Tower 3
21st Floor
130-132 Wireless Road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Tel +66 2 401 8800
Fax +66 2 401 8801

Barcelona
Clifford Chance
Av. Diagonal 682
08034 Barcelona
Spain
Tel +34 93 344 22 00
Fax +34 93 344 22 22

Beijing
Clifford Chance
35/F, China World Office 1
No. 1 Jianguomenwai Daji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04
China
Tel +86 10 6535 2268
Fax +86 10 6505 9028

Brussels
Clifford Chance
Avenue Louise 65 Box 2
1050 Brussels
Belgium
Tel +32 2 533 5911
Fax +32 2 533 5909

Bucharest
Clifford Chance Badea
Excelsior Center
28-30 Academiei Street
12th Floor, Sector 1
Bucharest 010016
Romania
Tel +40 21 66 66 100
Fax +40 21 66 66 111

Casablanca
Clifford Chance
169, boulevard Hassan 1er
Casablanca 20000
Morocco
Tel +212 520 132 080
Fax +212 520 132 079

Doha
Clifford Chance
QFC Branch
Suite B, 30th floor
Tornado Tower
Al Fandaq Street
West Bay PO Box 32110
Doha
State of Qatar
Tel +974 4491 7040
Fax +974 4491 7030

Dubai
Clifford Chance
Building 6, Level 2
The Gate Precinct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PO Box 9380
Dubai
United Arab Emirates
Tel +971 4 362 0444
Fax +971 4 362 0445

Düsseldorf
Clifford Chance
Königsallee 59
40215 Düsseldorf
Germany
Tel +49 211 43 55-0
Fax +49 211 43 55-6000

Frankfurt
Clifford Chance
Mainzer Landstraße 46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 +49 69 71 99-01
Fax +49 69 71 99-4000

Hong Kong
Clifford Chance
28th Floor
Jardine House
One Connaught Place
Hong Kong
Tel +852 2825 8888
Fax +852 2825 8800

Istanbul
Clifford Chance
Kanyon Ofis Binasi Kat 10
Buyukdere Cad. No. 185
34394 Levent
Istanbul
Turkey
Tel +90 212 339 0001
Fax +90 212 339 0088

Jakarta**
Linda Widyati & Partners
DBS Bank Tower
Coutco World One 28th Floor
Jl. Prof. Dr. Satrio Kav 3-5
Jakarta 12540
Indonesia
Tel +62 21 2968 8300
Fax +62 21 2968 8310

Kyiv
Clifford Chance
75 Zhytyanska Street
01032 Kyiv
Ukraine
Tel +380 44 390 5885
Fax +380 44 390 5886

London
Clifford Chance
10 Upper Bank Street
London, E14 5J
United Kingdom
Tel +44 20 7006 1000
Fax +44 20 7006 5555

Luxembourg
Clifford Chance
10 boulevard G. D. Charlotte
B.P. 1147
L-1011 Luxembourg
Grand-Duché de Luxembourg
Tel +352 48 56 50-1
Fax +352 48 13 85

Madrid
Clifford Chance
Paseo de la Castellana 110
28046 Madrid
Spain
Tel +34 91 590 75 00
Fax +34 91 590 75 75

Milan
Clifford Chance
Piazzetta M. Bossi, 3
20121 Milan
Italy
Tel +39 02 806 341
Fax +39 02 806 34200

Moscow
Clifford Chance
Ul. Gashoka 6
125047 Moscow
Russian Federation
Tel +7 495 258 5050
Fax +7 495 258 5051

Munich
Clifford Chance
Theresienstraße 4-6
80333 Munich
Germany
Tel +49 89 216 32-0
Fax +49 89 216 32-8600

New York
Clifford Chance
31 West 52nd Street
New York, NY 10019-6131
USA
Tel +1 212 678 8000
Fax +1 212 678 8375

Paris
Clifford Chance
9 Place Vendôme
CS 50019
75003 Paris Cedex 01
France
Tel +33 1 44 05 52 52
Fax +33 1 44 05 52 00

Perth
Clifford Chance
Level 7, 190 St Georges Terrace
Perth, WA 6000
Australia
Tel +61 8 9262 5555
Fax +61 8 9262 5522

Prague
Clifford Chance
Jungmannova Plaza
Jungmannova 24
110 00 Prague 1
Czech Republic
Tel +420 222 556 222
Fax +420 222 555 000

Riyadh
Clifford Chance
Building 15, The Business Gate
King Abdul Aziz International Airport Road
Cordoba District, Riyadh
P.O. Box 30230, Riyadh 11613,
Kingdom of Saudi Arabia
Tel +966 11 481 9700
Fax +966 11 481 9701

Rome
Clifford Chance
Via Di Villa Sacchetti, 11
00197 Rome
Italy
Tel +39 06 422 911
Fax +39 06 422 91200

São Paulo
Clifford Chance
Rua Funchal 418 15th Floor
04551-060 São Paulo SP
Brazil
Tel +55 11 3019 6000
Fax +55 11 3019 6001

Seoul
Clifford Chance
21st Floor, Fernum Tower
19, Eulji-ro 5-gil
Jung-gu, Seoul 100-210
Korea
Tel +82 2 6353 8100
Fax +82 2 6353 8101

Shanghai
Clifford Chance
40th Floor
Bund Centre
222 Yan An East Road
Shanghai 200002
China
Tel +86 21 2320 7288
Fax +86 21 2320 7296

Singapore
Clifford Chance
12 Marina Boulevard
25th Floor Tower 3
Marina Bay Financial Centre
Singapore 018982
Tel +65 6410 2200
Fax +65 6410 2288

Sydney
Clifford Chance
Level 16
No. 1 O'Connell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Tel +61 2 8922 8000
Fax +61 2 8922 8088

Tokyo
Clifford Chance
Akasaka Tamako Tower, 7th Floor
17-7 Akasaka 2-Chome
Minato-ku, Tokyo 107-0052
Japan
Tel +81 3 5561 6600
Fax +81 3 5561 6699

Warsaw
Clifford Chance
Norway House
ul. Luwiska 19
00-660 Warszawa
Poland
Tel +48 22 627 11 77
Fax +48 22 627 14 66

Washington, D.C.
Clifford Chance
2001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1001
USA
Tel +1 202 912 5000
Fax +1 202 912 6000

* Clifford Chance's offices include a second office in London at 4 Coleman Street, London EC2R 5JJ.
** Linda Widyati & Partners in association with Clifford Chance.

MEMO



MEMO



MEMO



MEMO



MEMO

